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2
----------	-----

2014년 12월 17일
운 영 위 원 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 11. 28. 최영수 의원

나. 회부일자 : 2014. 12. 2.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2014년 12월 17일 상정·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최영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지방이양 사무가 증가하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도 다양화 되는 등 지방행정은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된 반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현행과 같은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제도는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급격한 의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데도 한계가 있음.

- 이에,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의정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의원에 대한 보좌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함.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건의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 본 건의안은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집행부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회 통제기능을 보다 효과적이며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의회의원 보좌관제의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2 광역의회 보좌관제도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동향

- 안전행정부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2013. 4. 16)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원보좌관 및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추진’을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국회에서도 지방의원의 보좌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임.

※ 정청래 의원(2012.9.6.)

- 이처럼 정부와 국회가 광역의회 보좌관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관련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119	2012. 6.13	김동철	①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②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1608	2012. 9. 6	정청래	①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②지방의회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 ③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호 인사교류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④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 소속 직원의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
2598	2012.11.16	문병호	①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하도록 함.
3056	2012.12. 7	이상민	①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함. ②의회사무국 직원의 원활한 인력교류를 위하여 광역시도의회에 지방의회인사교류협의회를 둬.
3571	2013. 2. 1	정수성	① 전문위원직을 별정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만 임명함.
7920	2013.11.20	배기운	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직렬을 별도로 설치 ②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의 상호 인사교류를 위한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근거 ③ 지방의회 공무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의 의 인사교류는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도록 함.
12694	2014.11.27	이노근	①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3 지방의원 보좌관제도의 필요성

-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조례안, 예산안, 결산, 기채, 기금,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청원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해야 함.
- 지방의회에서 다루는 예산규모가 연간 220조원을 넘고, 수백 개가 넘는 많은 조례를 심의 결정하는데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이 전무하다는 것은 문제임.
- 지방의원이 보좌인력 없이 방대한 집행기관의 사무를 효과적으로 견제 감시 하고, 지역의 다양한 민원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임.
-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면서도 실효성 높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중 의원보좌관제도 도입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하겠음.
-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도입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계속적으로 학계와 지방의회에서 주장한 사안인 바, 이는 지방자치 시행 이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이 확대되고 중앙정부의 사무가 지방으로 대폭 이양됨에 따라 지방 사무가 증가되고 지방행정의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노정되어 왔기 때문임.
-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좌관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음.

-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전문성을 갖춘 보좌직원을 두게 되면 지방의회가 제왕적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하고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과 감시가 가능해져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음.

※ 2014년 4월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실에서 발표한 「입법정책지원에 대한 만족도 현장조사보고서」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중 ‘바람직한 의원보좌관 제도 도입 형태’에서 ‘1대1 개인보좌’를 선택한 의견이 98.1%를 차지했음.

4 결 론

- 지방자치 시행 이후 중앙정부의 사무가 지방으로 대폭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지방행정이 지속적으로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광역의회는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보좌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급격한 의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민원을 반영하는 등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음.
- 본 건의안은 중앙정부의 광역의회 보좌관제도 도입 방침(2014년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운영자로서의 책임있는 실천을 요구하고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매우 시의적절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지속적인 지방분권의 추진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들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고, 시민들의 지방행정 수요 또한 확대 분화되는 등 지방행정은 갈수록 전문화, 복잡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화·분권화 추세에 맞춰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최고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올바른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고, 특히 단체장의 전횡과 일방적 독주를 적절히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전문적 의정역량을 함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강시장-약의회’라는 태생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단체장에 대한 통제·감독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은 의회사무기구를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입법이나 정책적 기능 보다는 단순 사무 또는 행정업무 보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좌에는 큰 한계가 있어 왔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은 매년 방대한 지방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연간 막대한 금액의 예·결산과 각종 안건 심사 등을 단 한 명의 보좌인력 지원 없이 혼자서 힘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지방의원 개개인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모든 정책을 효과적으로 견

제·감시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만 살펴봐도, 의원 1명당 약 십만 명의 주민을 대표하면서 도시국가 수준인 34조원의 막대한 재정을 처리하고 있고, 1만 7천명이 넘는 공무원을 상대해야 한다.

이처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양적·질적으로 대폭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실효성 있게 지원하는 장치인 의원보좌관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의 수가 인턴직원 포함해 9명에 이르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안전행정부도 2013년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는 정부 스스로도 유급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2014년 7월 새로운 민선7기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발표의 공신력을 믿어 왔던 많은 지방의원들의 좌절감과 상실감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국회와 안전행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 효율성 향상,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회 통제기능을 보다

효과적이며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원에 대한 보좌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1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첨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3조의2(의원의 보좌직원) ① 시· 도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보좌직원의 직급과 정수, 직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